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
----------	---

제출년월일: 2026. 6. 30.

제 출 자: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제척·회피·기피) 및 서면심의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회피 대상 구체적 명시(안 제9조제5호)
- 나.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 다. 서면 심의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 마. 청렴서약서 별지 추가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6. 5. 19.(화) ~ 6. 8.(월) (20일간)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별첨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함”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기본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렴서약서”를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을 “(위원회의 설치내용)”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과하지”를 “지나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초구의회 의장이”를 “서초구의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로, “중”을 “구성 시”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해외여행”을 “국외여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개최를 원칙으로 하
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
최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
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청 럽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서초구 『 』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
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비
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초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이바지함----- --.
제2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기본원칙) ①·② (생 략)	제2조(기본이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를 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해촉 후 비위촉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3. (생략)

④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제7조(위원회의 설치내용)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나지 -----

---. -----

---.

1. ----- 서초구의회가 ---

2.·3. (현행과 같음)

④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

----- 구성 시

-----.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⑤·⑥ (생 략)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생 략)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
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
운 경우

3.·4. (생 략)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
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생 략)

<신 설>

-----.

⑤·⑥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해촉) -----

-----.
-----.

1. (현행과 같음)

2. -----
----- 국외여행

3.·4. (현행과 같음)

5.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
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제1호

제19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위원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미첨부함.

4. 작성자 : 기획예산과 이승진(2155-6371)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과	
연 락 처	(02) 2155-6371